

4. 외국인 지주회사 적극 허용 방침

- (외국인 지주회사 적극 허용)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·전환에 대한 규제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M&A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,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 지주회사의 설립·전환에 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
- (문제점) 국내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·전환 금지로 인해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, 더욱 중요한 것은 지주회사 규제 해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임
- (전망) 정부는 규제의 차별성이 문제시됨에 따라,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설립·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됨

○ 지주회사 관련 정책 동향

- 지주회사 설립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,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보안이 지배적이었음
 - 재경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'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금지' 규제를 해제하려는 방침이었음
 - 그러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채무제표의 작성,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이 이루어져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는 2000년 이후에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함
- 한편,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대한 규제가 외국인 직접투자와 M&A의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판단 아래,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움
 - 국내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음

○ 현행 제도 및 정책 방향

- 현행법상으로도 외국인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금지되었던 것은 아님.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제력 집중 억제 일환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고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
 -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
 -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국인 지분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함(「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)
-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에 관한 승인 절차(「외국인

투자사업 영위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(전환) 승인신청 요령.)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적극적으로 승인할 방침임

○ 효과 및 문제점

- (효과)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적극 허용하는 경우, 외국 자본의 진출 방식(기업 조직 및 경영 방식)이 다양화될 수 있어 제도적으로는 M&A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음
- (문제점) 외국인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적극 허용하는 반면 국내 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는 경우, 역차별로 인해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 조직 및 경영 방식이 효율적인 산업이나 사업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음
 -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'공정한 경쟁 수준(level-playing field)' 마련에 위배되는 것임
 -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을 외국인 기업까지 확대하거나, 아니면 국내 기업(주로 대규모 기업집단)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임. 개방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, 후자쪽으로 공정거래법의 수정이 요구됨
- 지주회사는 단순히 외자 도입의 문제만은 아님
 - 지주회사는 사업 재구축에 유용한 기업 조직 형태임
 - 구조조정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임

○ 전망

- 외국인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인 만큼,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당초의 공정거래위원회 안보다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
-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자 경제력 집중 발생 우려가 적은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임
- 지주회사 허용 방안
 - (설립 주체에 대한 요건) 지주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의 금융 또는 비금융부문 중 어느 한 부문의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총액의 10%를 넘지 않아야 함.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이 200% 미만이어야 함. 지주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전액 해소해야 함
 - (출자방식에 관한 요건)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합산 지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.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직접 상호출자는 불허함

(박 동 철 dcpark@hri.co.kr ☎ 724-4030)